
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 정보) 제공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시고,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신청인	대상구분		보훈번호		성명	
	주소				전화번호	

동의인 (신청인 및 가구원)	신청인 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⁾ (서명 또는 인)	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²⁾ ※ 부동의 시 우편통보(주소·전화번호 기재)	
			-		서명 또는 인	주소 및 전화번호
			-			
			-			
			-			
			-			
			-			
			-			
			-			

정보제공 목적	[]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	[]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
	[]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	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·제14조의4·제14조의5·제19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·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·제8조의2·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등의 장
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

귀하

비고

-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(만약,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.
-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: 뒤쪽 참조
- 정보제공 목적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: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

금융회사 등의 명칭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마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- 사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자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카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타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파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하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1. 금융정보
 - 가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
 - 나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- 다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신탁, 연금신탁: 최종시세가액(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)
 - 라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 예금증서: 액면가액
 - 마.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2. 신용정보
 - 가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- 나. 신용카드 미결제금액
3. 보험정보
 - 가. 보험증권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- 나. 연금보험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

유의사항

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3제3항, 제14조의5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,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희망자 또는 요양지원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